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제공 등〉

■ 정경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748호)

2024.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를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관으로 확대	3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사근로자 인적사 항 제공 의무 신설	7
3. 가사근로자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등	12

I. 제안경위

2023년 12월 5일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3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육아도우미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원 확인 증명서를 요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음.

반면, 가사근로자법에는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규정할 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또한,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1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정의를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행법 제7조제1항1)에서 모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정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정부인증을 받지 않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2조 및 제26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1) 제7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u>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이</u> <u>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u> <u>하는 기관을 말한다.</u> 3. ~ 5. (생략) 제26조(벌칙) ①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u>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u> <u>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u> <u>스 제공기관임을 사칭한 자</u> 2. (생략)	----<u>가사서비스 이용자와 가</u> <u>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u> <u>고</u>----- ----- -----. 3. ~ 5.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③ ----- ----- -----. 1. <u>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u> <u>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u> <u>하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거</u> <u>나 같은 조 제5항</u>----- ----- ----- 2.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가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 등 가정생활의 유
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²⁾ 그 제공형태는 ①가사서

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그 이용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공하거나 ②사업주가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 중에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사회보험료 등의 지원과 최저임금·퇴직금 등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가사근로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해당 요건에는 가사근로자 5인 이상 상시 고용이 포함되어 있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의 가사근로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받게 되는바, 개정안은 당초 이 법의 제정 취지인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사회보장권 수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모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고,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을 보장하는 일반 노동관계법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일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반적인 근로와 달리 개별 고객의 수요 발생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의 변경·중단의 가능성이 크며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인적 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사근로의 비즈니스 모델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부담 가중이나 서비스 이용 요금 증가로 인한 수요 축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³⁾에 따라 채택되지 않고, 기존의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이 유지된바,

법 제정 당시 제기된 부작용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정부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대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의 정도와 우려되는 부작용의 정도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모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간주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인증을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경영 활동에 과도한 제약이며,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현행법과도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1. 3. 12)’에서 가사근로자가 개별 고객 수요 발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서비스 수요의 변동 폭이 크고, 이용자의 사정으로 잦은 변경·중단 가능성이 있어 근로관계법령을 일반적·확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가사서비스에 적합한 보호 규정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20-22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장정우 진술의견 참조)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근로자 인적사항 제공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 확인 결과 등의 정보(이하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이라 함)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① (생략) <u><신설></u>	제9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u>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경력, 범죄경력조회 결과,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결과 등의 정보(이하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이라 한다)를 제11조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u>

<신 설>

②·③ (생 략)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5. ~ 10. (생 략)

② ~ ⑥ (생 략)

여야 한다.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13조의2에 따른 가사근로자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을 교부한 때에는 이용자에게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23조(시정명령 및 인증 취소)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사근로자 인적사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4. 제9조제4항-----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생략)	제26조(벌칙) ① (생략)
② 제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5항-----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특별히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는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⁴⁾

4) 제12조(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12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이들을 아동학대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모든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범죄경력조회결과,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결과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서비스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⁵⁾ 유사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장 사적인 장소라 할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12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등)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내용, 시설·인력 현황자료 및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 등을 서비스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기관의 장은 해당 아이돌보미의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제18조의2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 있는 이용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아동의 보호·양육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근로자에게도 범죄경력 등의 조회 결과를 수집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근로자 정보를 제공할 정책적 필요성과 최소한도로 수집·보유·이용되어야 하는 개인정보를 민간기관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자가 수집·보유·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침해당하는 가사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형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 근로자의 범죄경력 등의 조회 결과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12세 이하의 아동을 아동학대로부터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에서도 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보미 정보제공을 서비스기관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①기업이 소속 근로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할 서비스의 내용, 방법, 절차, 아이돌보미의 정보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자(고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를 찾기도 어려우며,⁶⁾

② 「아이돌봄 지원법」의 경우, 서비스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12세 이하 아동) 엄격한 법정 요건을 요구하는 아이돌보미에 한해 서비스 기관이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고,

③가사서비스 중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규율도 적용받게 되므로, 가사근로자법에 중복 규정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 가사근로자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6) 일반 가정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설치기사, 정수기 관리원 등은 물론 노인 요양보호, 장애인 돌봄 등의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이 소속 근로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는 의견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3조의2(가사근로자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u> <u>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u> <u>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u>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u>

	<u>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u>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가사근로자에 대한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u> ④ <u>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기재사항, 제3항에 따른 증명서 사본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육아도우미⁷⁾가 본인 스스로의 신원 증명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신원 확인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⁸⁾ 이는 아이돌보미⁹⁾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 이후 민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5. “육아도우미”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①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육아도우미 신원

간 영역의 육아도우미에 대하여도 아동 학대 예방책 중의 하나로 육아도우미의 자질을 제고하려는 장치를 마련한 데 따른 것임.¹⁰⁾

개정안은 가사근로자에 대하여도 육아도우미 신원확인증명서와 같은 신원증명발급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는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가사근로자의 신원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신원이 증명된 가사근로자로부터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육아도우미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지인의 소개 등 개인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신원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마련된 제도인 반면, 현행법의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고용계

확인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를 받은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9)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이돌보미”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10) 「아이돌봄 지원법」(법률 제17283호, 2020. 5. 19. 일부개정)의 개정이유 및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 2019. 7. 19) 검토보고(2019. 11) 참조

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다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가사근로자의 신원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정 부분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이돌봄 지원법」의 경우 신원 확인 증명서 요청 주체가 “육아도우미가 되려는 사람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 중인 사람”인 본인이나, 개정안은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주체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해당 기관이 가사근로자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가사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근로자가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 대상인 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 해당될 경우, 필요하면 스스로 동법에 따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2